

내부신고 / 내부조사(소통핫라인) 외부 위탁의 장점

- **국제적 흐름입니다.**

최근 국제거래에서는 성과와 실적보다도 준법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내부 취약점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공정성이 담보되어 국제 거래기준을 충족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외부 위탁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불법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소속된 기업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반면 외부 기관에는 비교적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신고가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내부문제가 바로 외부 수사기관 또는 언론을 통해 외부화되는 것보다 사전에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존재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은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 관리하는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며, 수준 높고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통핫라인 시스템 활용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업의 ISO 37001표준(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 심사, ISO 19600 표준(준법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 심사에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 부서가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부 부서가 신고를 처리하는 기존의 내부신고 방식은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내부신고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청렴 이미지가 제고되고, 거래 상대방이 느끼는 신뢰를 증대하게 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통핫라인에서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신고는 보안이 철저한 지평의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신고자의 정보가 대상회사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를 선택하면 지평 소통핫라인의 신고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소통핫라인은 익명신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의 근거, 내용 등을 추가 확인합니다.